감 정 평 가 서

건 명	노충호 소유물건(2025타경3506)
의 뢰 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강수현
감정서번호	SA25-050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성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하 종 성

감정평가액	삼십일억육천삼백칠십팔만칠천사백원정(₩3,163,787,400.-)				
의 뢰 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강수현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 출 처	대전지방법원 경매9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노충호 (2025타경3506)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5.23	2025.05.19 ~ 2025.05.23		2025.05.24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3,977.3	토지	3,977.3	-	3,115,787,400
	제시외물건	(15)	제시외물건	15	-	8,000,000
	제시외수목	(400)	제시외수목	400	-	35,000,000
	제시외관정	(1식)	제시외관정	1식	-	5,000,000
	합 계					₩3,163,787,4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공부	면적(㎡) 사정	감정평가액 단가	감정평가액 금액	비고
1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263-2	하천	계획관리지역	83	83	310,000	25,730,000	
2	동소	263-3	답	계획관리지역	1,179.4	1,179.4	688,000	811,427,200	현황 "전" 석축, 조경석 등 포함평가
3	동소	263-7	답	계획관리지역	1,652.9	1,652.9	688,000	1,137,195,200	현황 "전" 석축, 조경석 등 포함평가
4	동소	302-22	대	계획관리지역	663	663	1,369,000	907,647,000	
5	동소	302-26	도로	계획관리지역	1,000x----1,000	319	452,000	144,188,000	노충호지분
6	동소	303	대	계획관리지역	80	80	1,120,000	89,600,000	
	소 계							**₩3,115,787,400**	
	(제시외)								
㉠	동소	263-7 지상	정자	목구조 기와지붕	(15)	15	-	8,000,000	실측사정
㉡	동소	263-3 지상	관정	농업용	(1식)	1식	-	5,000,000	
	동소	263-2 263-3 263-7 지상	수목	소나무 등	(약400주)	400주	일괄	35,000,000	
	합 계							**₩3,163,787,4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의 개요

1. 평가목적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소재 “금암1리마을회관” 북동측 및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6필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

가.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형상 지세	도로
1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263-2	하천	83	전 등	계획관리	부정형 완경사	맹지
2		263-3	답	1179.4	전	계획관리	부정형 완경사	소로한면
3		263-7	답	1652.9	전	계획관리	부정형 완경사	소로한면
4		302-22	대	663	주거나지	계획관리	사다리 완경사	세로(가)
5		302-26	도로	1000*319 /1000	도로	계획관리	부정형 완경사	세로(가)
6		303	대	80	주거나지	계획관리	사다리 완경사	맹지

나. 주위환경

기호1,2,3
본건 주위는 농경지역으로서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혼재 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호4,5,6
본건 주위는 전원주택단지로서 전원주택이 주를 이루며,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등이 혼재 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됨

다. 공법상 제한사항(토지이용계획사항)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소하천구역(사기천)

기호2,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기호4,6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5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중점경관관리구역,접도구역

3. 기준시점 결정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현장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05월24일을 본건의 **“기준시점”**으로 결정함.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대상물건의 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건 평가는 실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고 평가하였음.

5. 기타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등에 의하였음.

나. 기호5토지는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로서 공유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다. 본건 토지의 지적관련사항은 현장조사시 목측으로 이루어진 바, 정확한 지적경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함.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함.

2. 감정평가 조건

없 음.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식 개관

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이 있음.

나. 원가방식이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다. 비교방식이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식으로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수익방식이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마.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방식 적용

가. 규정검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하되, 본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바,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였음.

나. 대상물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의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된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다른 방법에 의거 산정한 가액을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토지는 관계법령에 명시된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Ⅳ. 대상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

가. 비교표준지 선정

평가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들 중에서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위치, 주위환경,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있어 비교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2025. 01. 01 기준)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원/㎡)
36110-1602	장군면 금암리 264	답	2,182	전	계획관리	소로한면	부정형 완경사	291,500
36110-1608	장군면 금암리 314-11	대	562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로(가))	정방형 평지	596,000

나. 시점수정(세종특별자치시 계획관리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01.01 ~ 2025.03.31	0.536	2025년03월 누계변동률
2025년 03월변동률	0.188	-
누 계 2025.01.01 ~ 2025.05.24	0.865 (1.00865)	(1 + 0.00536) * (1 + 0.00188 * 54/31) ≒ 1.00865

※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된 지가변동률은 최근 고시된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표준지는 지역요인 대등함.

라. 개별요인 비교

(1) 농경지대(A표준지)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주거지대(B표준지)

주거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중심지의 접근성	중심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접면, 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등 기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	0.90	1.00	0.50	1.00	1.00	0.450
	본건은 표준지에 비해 접근조건(도로조건 등) 및 획지조건(이용상황 등)에서 열세임.						
2	-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표준지에 비해 대체로 대등함.						
3	-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표준지에 비해 대체로 대등함.						
4	1.00	1.10	1.00	1.00	1.00	1.00	1.100
	본건은 표준지에 비해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함.						
5	1.00	1.10	1.00	0.33	1.00	1.00	0.363
	본건은 표준지에 비해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이용상황 등)에서 열세임.						
6	0.90	1.00	1.00	1.00	1.00	1.00	0.900
	본건은 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접면도로 등)에서 열세함.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58342-398, 토관58342-471)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 등에서 동일 수급권을 포함한 인근지역의 전반적인 가격수준과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전례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감정평가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함.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그 밖의 요인 보정내역

1) 사례의 선택

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공법상제한, 평가목적 · 위치 · 주위환경 · 기준시점 등을 고려시 비교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평가전례를 선정함.

구분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평가시점	전례단가 (원/㎡)	평가 목적
A표준지	금암리 408	답	계획관리	2023.01.11	532,000	담보
B표준지	금암리 314-15	대	계획관리	2024.10.31	1,230,000	담보

2) 산출 산식

$$\text{그 밖의 요인(기타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 기준 표준지의 단가}}{\text{기준시점 표준지 단가}}$$

$$= \frac{\text{비교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가) A표준지(기호1,2,3토지)

구분	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보정치 (사례기준/ 공시지가기준)
평가전례	532,000	1.06649※1	1.00	1.210※2	686,521	2.335
비교 표준지	291,500	1.00865	1.00	1.000	294,021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시점수정

기간	지가변동률 (%)	비고
2023.01.11.~ 2025.05.24	6.649 (1.06649)	세종특별자치시 계획관리지역 변동률 누계

※2 개별요인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10	1.10	1.00	1.00	1.00	1.210

* 표준지는 사례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우세함.

나) B 표준지(기호4,5,6토지)

구분	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보정치 (사례기준/ 공시지가기준)
평가전례	1,230,000	1.01281※1	1.00	1.000※2	1,245,756	2.072
비교 표준지	596,000	1.00865	1.00	1.000	601,155	

※1 시점수정

기간	지가변동률 (%)	비고
2024.10.31~ 2025.05.24	1.281 (1.01281)	세종특별자치시 계획관리지역 변동률 누계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개별 요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 표준지는 사례대비 대체로 대등함.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본 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평가전례 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표준지A 2.34, 표준지B는 2.07 로 결정하였음.

사. 토지단가(공시지가기준법)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291,500	1.00865	1.000	0.450	2.34	309,605	310,000
2	291,500	1.00865	1.000	1.000	2.34	688,010	688,000
3	291,500	1.00865	1.000	1.000	2.34	688,010	688,000
4	596,000	1.00865	1.000	1.100	2.07	1,368,831	1,369,000
5	596,000	1.00865	1.000	0.363	2.07	451,714	452,000
6	596,000	1.00865	1.000	0.900	2.07	1,119,953	1,120,0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

가. 거래사례의 선택

본건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공법상제한, 평가목적 · 위치 · 주위환경 · 기준시점 등을 고려시 비교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거래사례를 선정함.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토지면적 (㎡)	건물면적 (㎡)	거래시점	총거래금액 (천원)	자료 출처	비고
금암리 2**	답	계획관리	660	-	2024.12.19	270,000	KAIS	기호 1,2,3,
금암리 20*-*	대	계획관리	861	-	2023.05.31	950,000	KAIS	기호 4,5,6

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기호	사례토지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409,090	1.00	1.00935	1.00	0.719	296,886	297,000
2	409,090	1.00	1.00935	1.00	1.625	670,987	671,000
3	409,090	1.00	1.00935	1.00	1.625	670,987	671,000
4	1,103,400	1.00	1.05980	1.00	1.200	1,403,260	1,403,000
5	1,103,400	1.00	1.05980	1.00	0.396	463,076	463,000
6	1,103,400	1.00	1.05980	1.00	0.990	1,157,689	1,158,000

※ 사정보정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사정보정요인은 없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시점수정

기간	지가변동률 (%)	비고
2024.12.19 ~ 2025.05.24	0.935 (1.00935)	세종특별자치시 계획관리지역 변동률 누계
2023.05.31 ~ 2025.05.24	5.980 (1.05980)	

※ 지역요인

사례는 본건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등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	1.15	1.25	0.50	1.00	1.00	0.719
2	-	1.30	1.25	1.00	1.00	1.00	1.625
3	-	1.30	1.25	1.00	1.00	1.00	1.625
4	1.00	1.20	1.00	1.00	1.00	1.00	1.200
5	1.00	1.20	1.00	0.33	1.00	1.00	0.396
6	0.90	1.10	1.00	1.00	1.00	1.00	0.99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가. 시산가액(단가)비교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원/㎡)	거래사례비교법(원/㎡)
1	310,000	297,000
2	688,000	671,000
3	688,000	671,000
4	1,369,000	1,403,000
5	452,000	463,000
6	1,120,000	1,158,000

나. 토지평가액 결정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를 검토한 결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토지단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토지단가로 결정함.

기호	사정면적(㎡)	토지단가(원/㎡)	감정평가액(원)
1	83	310,000	25,730,000
2	1179.4	688,000	811,427,200
3	1652.9	688,000	1,137,195,200
4	663	1,369,000	907,647,000
5	319	452,000	144,188,000
6	80	1,120,000	89,600,000
합계	3,977.3		3,115,787,400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3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소재 소재 "금암2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 주위는 농경지역으로서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혼재 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기호4,5,6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소재 소재 "금암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 주위는 전원주택단지로서 전원주택이 주를 이루며,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등이 혼재 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대체로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 부정형,완경사의 토지로서 경계구분없이 대체로 "전"으로 이용중이며, 기호4,6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완경사의 주거나지이며, 기호5토지는 현황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2,3,4,5 토지는 포장도로를 통해 자동차통행이 가능하나, 기호1토지는 기호2토지, 기호6토지는 기호4토지를 통해 출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소하천구역(사기천)

기호2,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기호4,6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5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중점경관관리구역
접도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정자),제시외 관정(㉡) 및 제시외 수목(약400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2,3토지 및 인접토지상(지적도 참조)에 소유자미상의 비닐하우스 1개동이 소재하며, 이동이 가능한 시설(트렘블린(기호3지상),계사(기호2,3지상),간이화장실(기호2지상),컨테이너(기호4지상))은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광 역 위 치 도

N

S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263-2 (토지6필지)

상 세 위 치 도 (기호1,2,3)

N

S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263-2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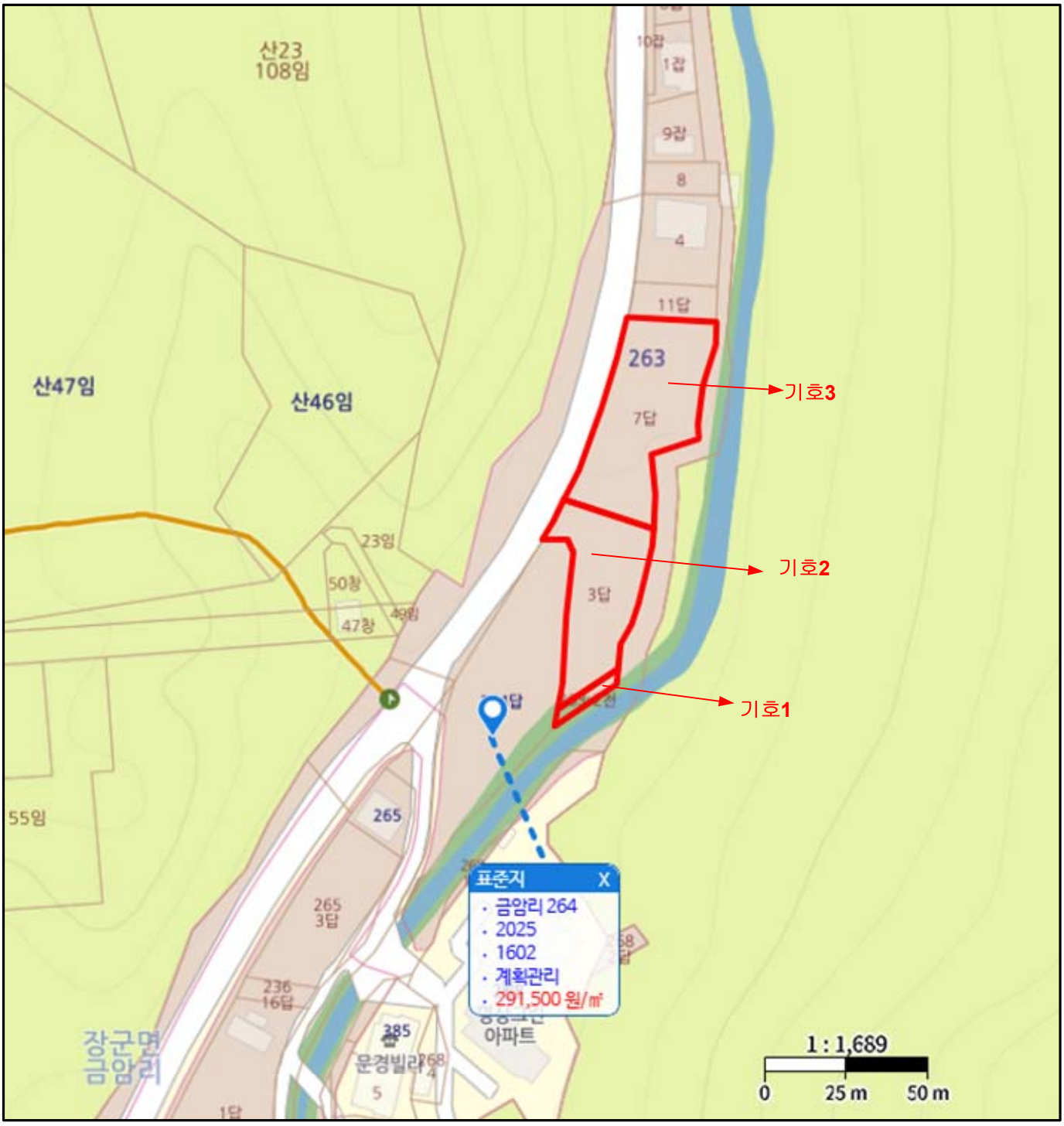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기호4,5,6)

N

S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302-22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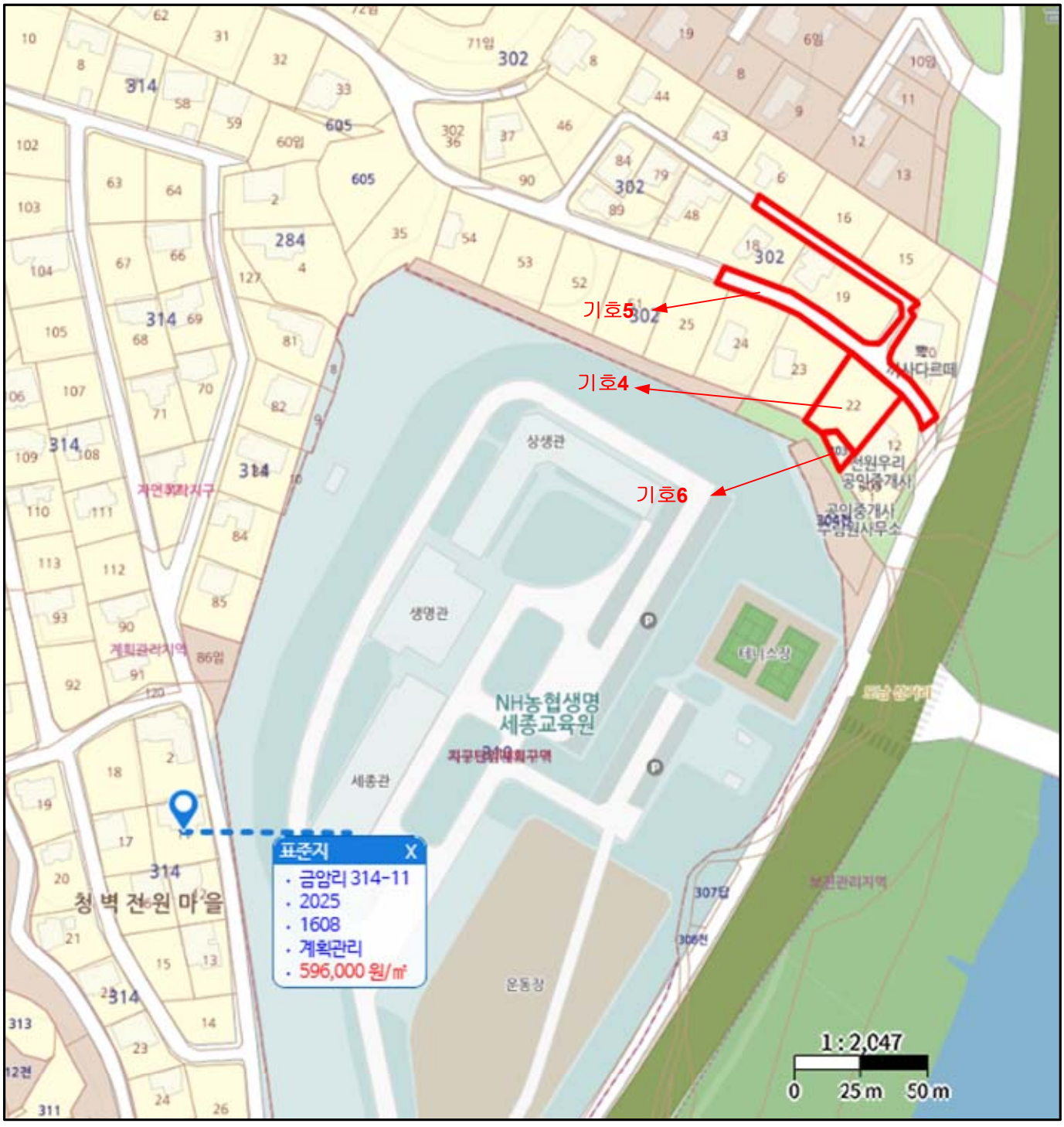

지 적 도 (기호1,2,3)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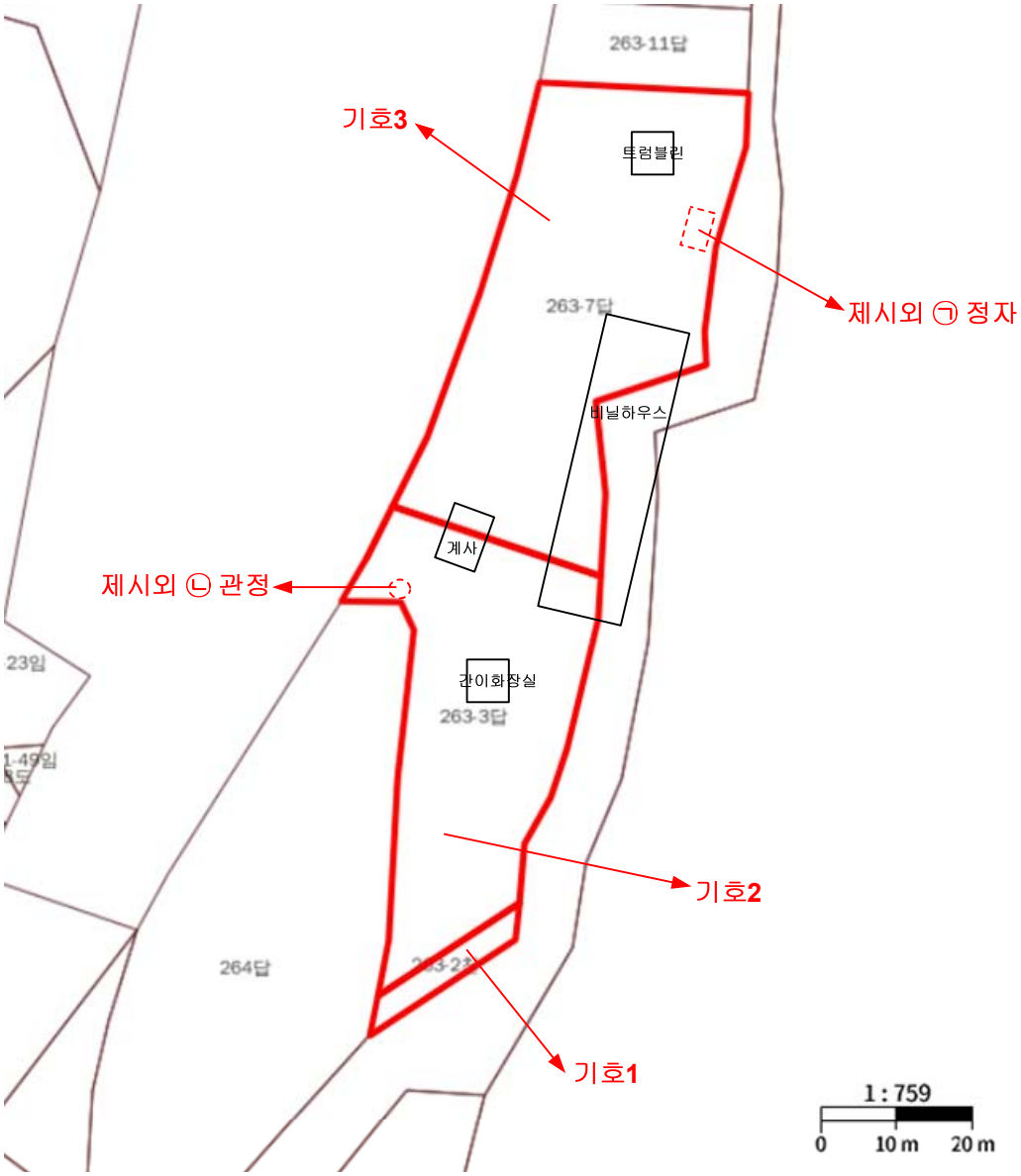

위 성 지 도 (기호1,2,3)

위성도는 참고자료이며 지적경계선 및 현재상황은 다를 수 있읍니다.

지 적 도 (기호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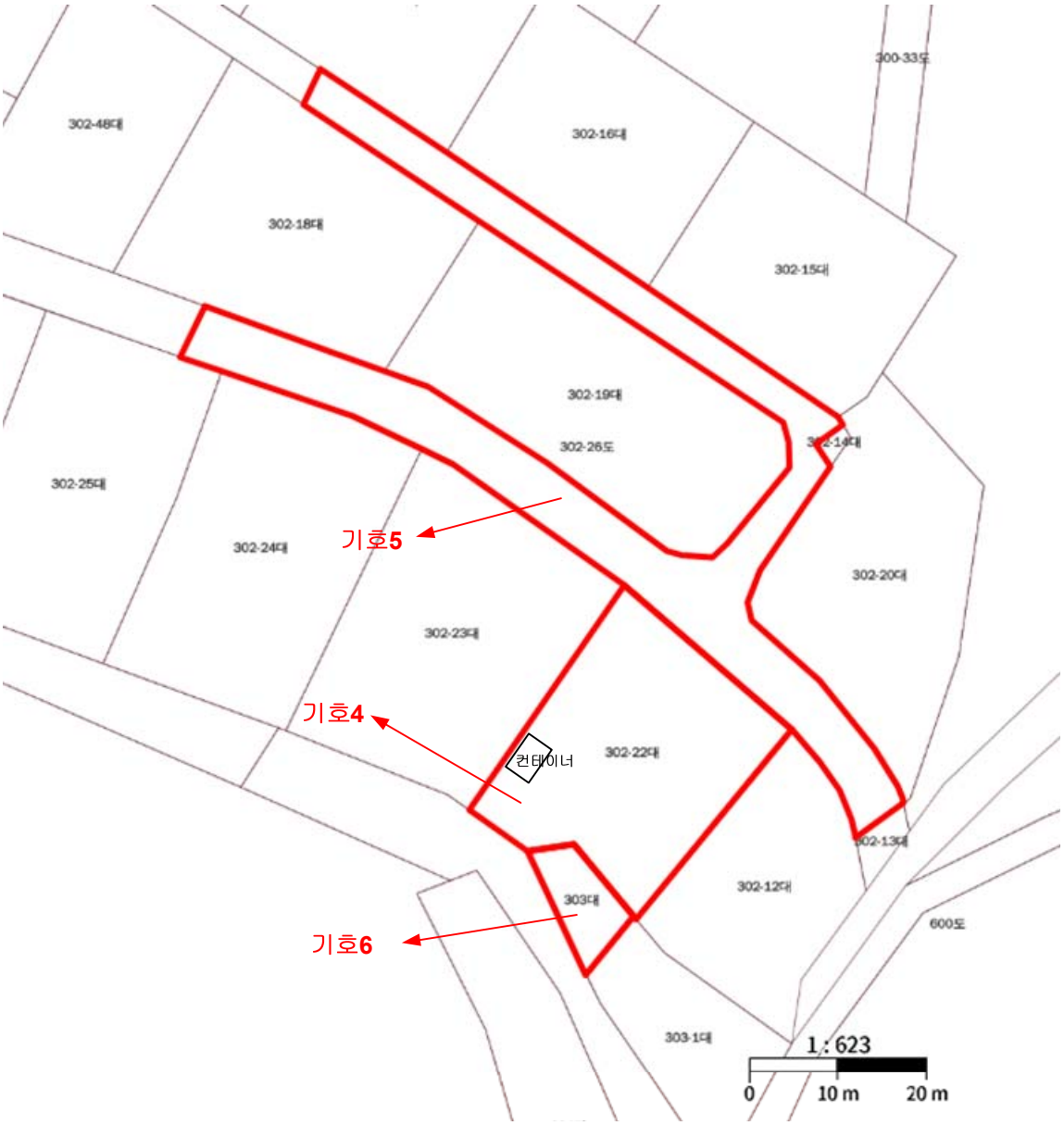
300-33도
302-48대
302-16대
302-18대
302-15대
302-19대
302-26도
302-14대
302-25대
302-24대
기호5
302-20대
302-23대
기호4
302-22대
컨테이너
302-13대
303대
302-12대
600도
기호6
303-1대
1 : 623
0
10 m
20 m

위 성 지 도 (기호4,5,6)

위성도는 참고자료이며 지적경계선 및 현재상황은 다를 수 있읍니다.

1

2

3

2,3

( )

( )

(1,2,3)

4

5

6

(4,5,6)